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도설명자료</b>	
	<b>배포일시</b>	<b>2019. 11. 22(금) / 총 6매(본문2, 붙임4)</b>
<b>담당 부서</b>	<b>국제항공과</b>	<b>담당자</b> ·과장 신윤근, 사무관 김수정, 주무관 정재향 ·☎ (044)201-4213, 4214
<b>보도일시</b>		<b>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b>

## 우리나라,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항행위원 재선

### - 대한민국, 국제항공사회에서 확고히 자리 잡다 -

- 캐나다 현지시간으로 11월 20일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의 제218차 이사회에서 치러진 항행위원회(ANC: Air Navigation Commission) 위원 선거(3년 임기)에서 우리나라 장동철 現 항행위원(국토교통부 서기관)이 만장일치로 재선되었다.
  - 항행위원회는 ICAO 이사회를 보조하는 상설위원회로서,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국제항행 및 항공기술 분야의 정책과 규칙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국제항공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.
  - 이번 선거에는 우리나라, 터키 등 20개국의 항공전문가들이 입후보했으나, 터키는 탈락하고 19개국이 선출되었다.
    - \* 2020~2022 임기 항행위원 당선국(19): 한국, 중국, 일본, 호주, 싱가포르, 러시아, 영국, 독일, 미국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사우디, 우간다, 코트디부아르, 네덜란드, 핀란드, 캐나다, 프랑스, 스페인
- 이번에 항행위원으로 재선된 장동철 서기관은 1994년 국토교통부(당시 건교부)에 입부하여 항공기술·안전분야 정책과 실무경력을 두루 갖춘 항공전문가로 '17년 8월부터 항행위원으로 활동해 왔다.

○ 특히, ‘항공통신/사고조사분야(CNS/ATM) 실무위원회’ 의장, ‘항공교통분야(ATM) 실무위원회’ 의장을 맡는 등 항행위원회에서 많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이사국 대표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어명소 항공정책관은 “지난 10월 ICAO 이사국 선거 7연임 달성에 이어 이번 항행위원 선거 6연임 성공으로 국제항공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, 앞으로도 국제항공 외교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구축 및 활동을 통해 국제항공사회에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.” 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김수정 사무관(☎ 044-201-421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*붙임 1**

**항행위원 당선인 이력**

	<p>장동철(52세)</p> <p>국토교통부 기술서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항행위원회 위원</p>
<p><b>학력사항</b></p>	<p>'04.2. 한국항공대 항공산업정보대학원(항공우주법학 석사) '92.2 한국항공대 항공관리학과(이학사)</p>
<p><b>경력사항</b></p>	<p>'94.12 ~ '03.10 건교부 항공교통관제센터</p> <p>'03.10 ~ '04.12 건교부 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관리과</p> <p>'04.12 ~ '08.6 건교부 항공안전본부 항공자격과, 공항안전과 공항감독관</p> <p>'08.7 ~ '11.7 ICAO 항공안전상시감시·평가과 전문관(P-4)</p> <p>'11.7 ~ '12.12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과</p> <p>'12.12 ~ '15.5 국토교통부 항행안전팀장</p> <p>'15.5 ~ '17.6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</p> <p>'17.8 ~ 현재 ICAO 항행위원회 위원 재직 중</p> <p>* '항공통신/사고조사분야(CNS/ATM) 실무위원회 의장('18.1~12) 역임, 항공교통분야(ATM) 실무위원회 의장('19.1~현재) 활동 중</p> <p>'16.11.21 ICAO 항행위원회 위원 재선</p>
<p><b>자격사항</b></p>	<p>항공교통관제사('94), 무선통신사('96), 공항안전감독관, ICAO USOAP평가관('08), 항행안전감독관('13)</p>

1 기 능

□ 항행위원회 설치배경과 의의

- ICAO는 설립 당시부터 전문적인 항공기술 관련 정책, 규정 심의를 위해 이사회 산하에 상설조직으로서 **항행위원회(Air Navigation Commission)**를 설치(협약 제56조)(\* 제1차 회의 1949.2.7 개최)
- 이사회와 함께 ICAO 핵심조직으로서 세계 항공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준(항공기, 공역, 운항규칙, 종사자자격, 공항 등), 관련 정책·사업 심의를 담당하고 있어 **각국이 참여하기 위해 경합**
  - \* (ICAO) 전세계 항공운송·기술의 발전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UN 산하 특별기구로서 준입법·사법·행정 기능을 수행(회원국 191개국, 한국 1952년 가입)

□ 임무·권한

- 19인의 항행위원은 ICAO를 대표해 개개인이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갖고 업무수행(주요 입안권과 발언권 보유)
  - 항공분야에 적용되는 국제기준(협약 부속서 등) 제·개정 심의·채택 권고
  - \* **협약 제37조**에 의거 항공종사자 자격제도, 비행규칙, 공항시설, 항공교통관제, 사고조사, 수색구조 등 **국제표준 및 권고사항** 채택
  - 글로벌 항공교통기술 발전 및 표준화(협약 제26조), 항공안전 개선계획 등 ICAO 중요 정책입안내용 검토·조언
  - 항공안전평가, 사고예방대책, 회원국 안전정보 수집·통보 관련 조언
  - ICAO 항행분야의 연간, 중·장기 업무계획 수립·보고
  - 소위원회 설치 승인, 패널 등 전문가그룹 설치 승인 및 임무부여, 그밖에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무 처리 등

## 2 정원 및 자격

- 협약 제56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명한 19명의 전문가(항공공학 및 항공실무 자격 및 경험보유)로 구성
  - \* 2005.4 시카고협약 제56조(항행위원 정원) 개정으로 15 → 19인으로 증원
- 위원의 자격(적격 요건)
  - 대졸이상 학력과 항공당국에서 기술관리 경력, 항공기술분야(조종, 관제, 항공공학, 통신전자 등)의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
  - 국제조약, 기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ICAO 공식언어(영어, 불어, 스페인어, 중국어, 아랍어)중 1개 이상 구사능력 필수

## 3 선출 및 운영

### □ 선출방식

- 모든 ICAO 체약국(191개국)이 항행위원 후보 추천 가능
- 총회 직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추천된 후보 중 항행위원 임명
  - 36개 이사국이 각각 19표씩을(연기명) 행사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자 중 다득표 순으로 임명(후보자가 정원을 미초과시 무투표로 결정)
- 임명된 위원 중 이사회에서 위원장(President of ANC) 선임

### □ 근무조건

- 임기는 3년이며, ICAO 본부가 위치한 캐나다 몬트리올에 거주토록 규정하고, 장기 불참시 자격상실도 가능(협약 제63조)
  - 항행위원들은 각국별 주ICAO대표부 소속으로 근무
- 급여, 출장경비 등 제 비용은 당해 위원을 추천국이 부담(협약 제63조)

## □ 회기운영

- 의사일정 및 업무프로그램은 **이사회의 승인**을 받아 결정되며, 이사회 회기와 동일하게 계획(다만, 회기 차수는 별도 산정)
  - 연 3차례 회기(1~3월, 4~6월, 9~11월), 각 회기는 전·후반 3주씩 회의개최(본회의: 화·목, 기타 그룹회의: 월·수·금)
- \* 이사회의 경우 전반부 분과위(Committee), 후반부 본회의(Council)로 구성

## □ 심의조직

- 본회의, 전원이 참여하는 상설워킹그룹(3개)\*, 분야별 의제토론 원활화를 위한 소그룹(Commission Group 6개), 필요시 특별워킹그룹(Ad-hoc WG) 등을 설치·운영
  - \* 의사절차워킹그룹(PM), 전략기획워킹그룹(SRP), 항행업무프로그램검토워킹그룹(PDP)
- 전문영역별 각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**17개 패널(Panel)**을 두어 국제기준 개발 등 기초 성안작업에 활용